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04
------	------

2016. 12.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G밸리 종합발전계획 발표 및 온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재생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산업단지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신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안 제명)
- 나. 분양사업의 적정이윤율,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 및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우선순위 선정 등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신설함 (안 제9조)
-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서면심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2항)
- 라. 산업단지(G밸리, 온수산업단지)에 기반시설 등 조성·확충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9조)

- 마.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판로개척 지원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안 제20조)
-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을 15%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하여, 적정이윤율을 10%로 규정함 (안 제21조)
-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의거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을 1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적정이윤율을 10%로 규정함 (안 제22조)
-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에 의거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등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녹지율·도로율의 5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안 제23조)
-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정비율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 규정 (안 제24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규정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지원 및 산업단지 관련 법령 위임 사항을 추가하여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나. 서울시의 산업단지와 관련 사업 현황

-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지원 등의 관련 시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의료·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의미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산업단지의 종류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農工團地), 지식·문화·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을 위하여 조성지역에 지정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음.

<전국의 산업단지 지정 현황>('13년말 기준)1)

	단지수 (개)	지정면적 (km ²)	입주업체 (개사)	가동업체 (개사)	고용 (천명)	생산 (조원)	수출 (백만달러)
국가	41	793,561	49,545	45,505	1,155	674	268,876
일반	528	507,148	24,331	21,266	706	309	148,932
도시첨단	11	2,272	224	174	2	0.2	3
농공	453	72,828	6,447	5,683	148	49	11,843
계	1,033	1,375,809	80,547	72,628	2,011	1,032	429,655

- 서울시에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1개소와 일반산업단지 2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동구에 일반산업단지의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의 산업단지 현황>('14년말 기준)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	서울온수산업단지
종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위치	1단지 : 구로구 구로동 2·3단지 : 금천구 가산동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
구성목적 및 특성	60년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 봉제산업 위주의 산업단지였으나,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첨단산업, 정보지식형 산업의 유치, 대기업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벤처센터 건립(2000)을 필두로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음	도심의 기계공장을 집단화, 협동화, 전문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업 단지 조성
입주 유치업종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	전 제조업
사업 시행자	한국수출산업공단	SH공사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구성기간	1965년 ~ 1974년	2008.12 ~ 2016.12	1970.4. ~ 1971.11.

1) 통계로 본 한국의 산업단지 10년(2003~2013), 한국산업단지공단.
2) 2015 한국산업단지총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	서울은수산업단지
면적	1,922,000㎡	1,111,000㎡	160,000㎡
	산업시설구역 1,446,000㎡ 지원시설구역 188,000㎡ 공공시설구역 288,000㎡	산업시설구역 730,000㎡ 지원시설구역 81,000㎡ 공공시설구역 211,000㎡ 녹지구역 77,000㎡ 기타 12,000㎡	산업시설구역 125,000㎡ 지원시설구역 1,000㎡ 공공시설구역 34,000㎡
입주업체	9,790개사	35개사	162개사
가동업체	8,191개사	96개사(컨소시엄 기준 35개사) 입주계약 완료. -실 입주 6개사(16년8월 현재)	161개사
고용인원	162,656명	6개사	2,010명
생산	170,513억원	자료없음(향후 조사 예정)	1,118억원
수출	3,934백만불	자료없음(향후 조사 예정)	10백만불

- 한편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2015년도 경쟁력강화 사업 대상단지’에 은수산업단지가 선정되어(‘15년 7월)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G밸리 飛上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은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총 사업비가 1,168억원(국비 110, 지방비 110, 민간투자 948)으로 인프라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앵커시설의 건립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고도화된 제조업 특화단지로 육성할 계획임.
 - 종전에 530억원(시비 395억, 구비 27억, 국비 65억, 민간 43억)이 투입된 G밸리 飛上 프로젝트(‘13~‘15)를 통하여 국가산업단지인 디지털산업단지에 기업지원시설, 도로교통, 녹지·보육시설 등을 확충하였고 현재는 기존의 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한 G밸리 종합발전계획(2015~2018)을 추진하고 있음.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개정안의 목적과 개요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운영 그리고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자치법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법령 위임 사항 등을 추가하고 제명도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4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

위, 제2장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장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4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교>

< 현행 조례 >	< 전부개정 조례 >
<p>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기능, 구성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기능, 구성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 등의 위탁근거 •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 건축사업의 분양 수익 산정시 이윤율, 입주우선순위(위임사항) • 재생사업지구 도로율 및 녹지율(위임사항)

(2) 총칙(안 제1조에서 제2조)

- 안 제1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본 개정안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제도와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종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의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소요기간과 비용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단지 등의 조성·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지정·승인·협의·조정하는 산업단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하단에서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산업단지에 대한 개별 조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조례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주자 유치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3)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안 제3조에서 제7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 및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개정안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센터에 관한 규정 중에서도 핵심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 조례에도 센터의 기능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법령에서는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에 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조례안에서는 센터의 운영을 비상설로 규정하고 있어(안 제5조 제1항)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토교통부(산업입지과)의 해석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상설 기관이지만 독자적인 조직이나 공간없이 담당과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별도의 센터 설치없이 담당부서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음.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안 제8조에서 제18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그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일부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법령의 규정>

안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의 각 호 사항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1호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3. 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0호
4.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운율의 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40조의3 제2항
5. 제23조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등 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
6. 제24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 선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안 제10조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과 위원의 자격 및 분야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자와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관련 법령(제6조 제2항)에 따른 것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 안 제11조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며 임기 중 사임 등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임기를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회의 개최와 의사 정족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 및 회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사유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사유와 별도로 3개의 사유를 추가로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안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제척사유는 아래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의 사유와 중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불필요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시행령의 제척사유 규정 비교>

개정안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1.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안 제15조 위원의 해임 규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것이며, 안 제16조 간사와 서기, 안 17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해당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① 법 제6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19조에서 제20조)

- 안 제19조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산업
 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을 비롯한 산업단지 내·외의
 기반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음
 -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산업
 단지를 의미함(「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현재 서울시는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에 G밸리 종합발전계획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개선, 판로개척, 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
 며, 경쟁력강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온수 산업단지도 재생사업을 위한 지구계
 획의 수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 지원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또한 안 제20조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에 대한 사무의 위
 임·위탁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입주기업
 에 대한 각종 지원들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있는 민간에 위임·위탁
 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6)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안 제21조에서 제23조)

① 분양가격의 적정이윤율(안 제21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
 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산업단지 용지를 분
 양하는 경우에 조성원가에서 적정이윤을 합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
 -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이윤율이 적용되
 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이 적용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⑥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정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 안 제21조는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와 국토해양부의 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를 따른 것이며 적정이윤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타 시·도의 분양가격 적정이윤율 현황>

- 100분의 9(1) : 경남
- 100분의 10(12)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100분의 11(1) : 충북
- 100분의 14(1) : 대전
- 미제정(1) : 제주

- 이와 같이 적정이윤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익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이 결정되므로 해당 산업단지의 위치, 분양시점의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정이윤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되고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참여가 낮아지게 됨.
-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적정이윤율을 10%로 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율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음.

【서울시 적정이윤율 전문가 설문조사(서울연구원)】

- ▶ 조사기간 : 2015. 5. 28. ~ 6. 28.

- ▶ 설문대상 :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 관련 전문가 143명(최종응답 82명)
- ▶ 이윤율
 - **적정이윤율 : 10%** (응답자 중 49%)
 - **최소이윤율 : 6%** (응답자 중 57%)
 - **최대이윤율 : 15%** (응답자 중 55%)
- ▶ 주요 의견
 - 적정이윤율의 상승이 민간 투자에 실질적이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상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전망
 - 주요 참고지표는 민간투자 및 부동산사업의 개발이윤율 등
 -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결정시에는 산업단지 분양가격, 위치 등을 고려

②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적정이윤율(안 제22조)

- 한편, 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시 적정이윤율에 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중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토록 하면서 적정이윤을 건축원가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 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안 제22조는 적정이윤율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타 시·도의 건축사업 분양수익 적정이윤율 현황>

- 100분의 9(1) : 경남
- 100분의 10(9)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100분의 12(1) : 충북
- 100분의 13(1) : 강원
- 100분의 14(1) : 대전
- 기타(1) : 경기
- 미제정(2) : 세종, 제주

- 이 같이 안 제21조와 제22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윤율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지나치게 현실과 맞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또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③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과 도로율(안 제2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사업지구의 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른 녹지율과 도로율 등의 기준³⁾을 시·도 조례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상 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타 시·도의 재생사업지구 녹지율·도로율 현황>

- 100분의 50초과(3) : 부산, 대구, 경북
- 100분의 70(1) : 충남
- 100분의 51~75(1) : 대전
- 100분의 51~80(1) : 인천
- 100분의 55~80(1) : 전북
- 기타(3) : 전남, 강원, 경남
- 미제정(6) :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제주

- 재생사업지구에서 녹지율과 도로율의 축소는 환경파괴와 재생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라는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④ 산업시설용지의 우선입주자 선정(안 제24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서는 산업시설용지의 우선입주자를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산업단지는 10%, 그 외 산업단지는 30%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 우선순위와 선정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3) 산업단지 규모별 녹지비율과 도로비율(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구분	산업단지 규모	계획기준
녹지율	300만㎡ 이상	10% 이상~13% 미만
	100만㎡ 이상~300㎡미만	7.5% 이상 ~ 10% 미만
	100만㎡ 미만	5% 이상 ~ 10% 미만
도로율	100만㎡ 이상	10% 이상
	100만㎡ 미만	8% 이상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삭제 <2008.9.25>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9.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
 2.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100분의 30

- 이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특성, 서울시의 전략산업,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임.

라. 공청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6년 11월 25일에 서울시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공청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의 상위법 상충 여부, 적정이운율 규정, 비용추계서의 누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공청회 개최 결과는 참고자료 2 참조)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 '16.11.25(금) 14:00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8명(서면제출 포함)
 - 서울시(서울시의회) : 김태희 경제정책과장, 한정훈 G밸리활성화팀장, 이미진 산업기반팀장, 주우철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 외부전문가 : 김목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 ※ 서면의견 제출 : 문종현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 서울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였음.

----- <공청회 결과 요약> -----

- 개정(안)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에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나, 제3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에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호간에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5조 수정필요
- 개정(안)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확충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추계서 필요함.
- 적정이윤율 규정은 타시도가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함이 합리적임

마. 종합의견

-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이 활발한 타 시·도와 달리 서울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규제와 제한으로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에 여의치 않아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간 명목상의 법규에 불과하였음.
 -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위촉이 된 적이 없었음.
- 하지만 서울디지털단지의 G밸리 종합발전계획과 온수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비롯하여 강동구에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취지와 목적은 타당함.
- 다만 일부의 규정들이 상위법의 규정에 맞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거나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함.
 - 지원센터의 비상설 운영 규정(안 제5조 제1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로 제14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공청회에서 지원센터의 비상설 운영 규정이 상위법의 상설 운영 규정과 상충된다고 지적되었음.
-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적정이윤율의 상한선을 100분의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하향 조정만을 허용하고 있는 강원도 등 타 시·도와 달리 본 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적정이윤율 결정 범위에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고 있음.
 - 공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 적정이윤율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본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산업단

지의 지정·개발·변경 등에 서울시의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비롯하여 적정이윤율과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어 위원의 위촉 시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04
----------	---------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의 규정에 맞지 않고 중복되거나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일부 부분을 수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적정이운율을 100분의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하향 조정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안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적정이운율 결정범위에 제한이 없어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지원센터의 비상설 운영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 나. 위원의 제척사유를 상위법령상의 제척사유에 맞게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 다. 적정이운율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수정함.
(안 제21조,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 제3항을 제1항에서 제2항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안 제21조제1항 하단 “금액의 100분의 10으로”를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22조제1항의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 ② ~ ③(생략)</p> <p>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p>② ~ ③ (생략)</p> <p>제21조(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p>② 제1항의 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윤율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22조(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은 100분의 10 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윤율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삭제></p> <p>① ~ ②(개정안과 같음)</p> <p>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p>제21조(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개정안과 같음) <p><삭제></p> <p>제22조(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삭제></p>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승인·협의·조정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단, 각 산업단지에 대한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6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

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8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산업입지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4.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윤율의 결정
5. 제23조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등 결정
6. 제24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고려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정하는 경

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임) ① 위원장은 위원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장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등

제19조(산업단지 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외에 기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외의 시설 조성·확충 지원 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입주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개발 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판로개척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사업 시행 및 관련 시설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제22조(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3조(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해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4조(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서 정한 비율의 산업시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고용효과, 첨단기술 보유, 투자 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3.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기업 중 시의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일자 리창출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
4. 기존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확장 또는 관할구역 내 기 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기업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의 경우에 우대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